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은행주식 보유 규제 합리화 방안

<추진배경>

- 우리의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엄격하여 사전적이면서도 획일적인 틀을 유지해옴.
 - 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(또는 은행지주회사)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%(지방은행은 15%)까지만 보유
(단,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금융위 승인하에 10% 초과보유 가능)
 - 산업자본은 원칙적으로 시중은행(또는 은행지주회사)의 의결권 있는 주식 4%(지방은행은 15%) 초과 보유 금지
(단,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하에 10%까지 보유 가능)
 - 산업자본이 사원으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여 은행주식 보유를 규제
- 국내은행들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,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산업 대형화를 통해 향후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.

<기본방향>

-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·지배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, 과도한 사전적·획일적 주식보유 규제를 선진국 제도에 접근한 합리적인 체계로 개선키로 함.
 -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연기금, PEF, 해외 유수의 은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
 -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
 -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

<주요내용>

- 공적 연기금의 비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짐에 따라 산업자본에 해당되었던 사항을 완화함.
 - 연기금이 투자한 BTO·BTL* 관련회사 자산·자본규모는 산업자본 해당 여부 판단 시 제외함.
 - * BTO는 민간에서 제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여 추진. BTL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
 - 공적 연기금(현재 62개)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.
-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의 투자자(LP)로서 PEF에 출자한 지분이 10%만 초과해도 해당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었던 PEF 관련 규제를 완화함.
 - 엄격한 사전통제·사후감독을 전제로 산업자본인 LP의 PEF 출자지분이 30%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
-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4% 초과보유 금지를 상향 조정하여 사전심사·사후감독강화를 전제하에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%로 상향 조정
- 해당 국가의 금융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유수의 은행(또는 은행지주회사)으로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, 그 은행 등이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·자본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시 제외함.

(은행법/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10/14)